

제 856 호

1981. 9.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수
편집 : 문화공부관 김진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1533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3
제 1534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도건설법안에의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개정조례)	6
제 1535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 3·4호선건설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	7

◎ 고시

제 315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미판지구)지적승인	8
제 316 호 : 육류연동가격 고시	8
제 57 호(종로구) : 종로구광고물제작정비지구지정고시	8

◎ 공고

제 46 호(용산구) : 공인개작공고	9
----------------------	---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40 호 : (강남구) : 공인개각공고 10

◎ 예 규

제 414 호 : 서울특별시 경찰 민원봉사 실운영 규정 증개정 규정 10

◎ 사 행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1981년 8월 2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33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안전,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조례지는 정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할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

의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정한다.

제 5 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사항
 8. 재무 및 회계에 관한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 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 2 장 임원과 직원
- 제 7 조 (임원)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과 감사 1인을 둘다.
- 제 8 조 (사장) ①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38-4 제 856 호 시

보 1981.9.1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이사)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제 10 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1 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는 직무를 겸할수 없다. 제 12 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의 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수 있다. 제 3 장 사 업 제 13 조 (사업) 공사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3호선 및 4호선의 건설	2.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3호선 및 4호선의 운영 3. 지하철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개발 기관 고시 세칙사립의 시행 4. 지하철 전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기타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6.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제 14 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사는 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 15 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16 조 (예산과 결산) ①공사는 매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4월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제 리의 원칙) 공사의 제리는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 투자기관
--	---

<p>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무를 감독한다.</p>
<p>제 18 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p>	<p>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p>	<p>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p>
<p>3. 차기이월금</p>	<p>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p>
<p>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p>	<p>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p>
<p>1. 마처분임여금 2. 사업준비금</p>	<p>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 5 장 기 채</p>	<p>제 23 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제 19 조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 할 수 있다.</p>	<p>제 7 장 보 칙</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 할 수 있다.</p>	<p>제 24 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p>
<p>제 20 조 (차관)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p>	<p>제 25 조 (공사재산의 무상 사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 할 수 있다.</p>	<p>② 공사는 지하철도 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p>
<p>제 21 조 (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할 수 있다.</p>	<p>제 26 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 할 수 있다.</p>	
<p>제 6 장 감 독</p>	
<p>제 22 조 (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p>	

38-6 제 856 호 시

보 1981.9.1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서울지하철건설주식회사가 해산될 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법인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1981년 8월 2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3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도건설법
임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법인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면제대상 및 세목) 지하철도 건설축진법 제 1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대하여 고유목적 수행과 관련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도시재화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 2항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서울지하철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시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3, 4호선 건설공사자금 조달을 위한 공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1981년 8월 2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3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 3,4호선건설자금
조달을위한공채조례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지하철 3,4호선 건설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방자치법 제 134 조의 규정에 의거 공채를 발행함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채 발행 한도액) 공채의 발행 한도는 700억 원으로 하며 년도별 발행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서울 지하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할 재산 및 운영권과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의 대가로서 교부 하는 공채는 양도 양수 계약 체결 시 발행한다.

제 3 조 (공채 매입 대상자) 공채의 매입 대상자는 지하철 3,4호선 건설에 참여하는 선설사·공회사로 한다.

제 4 조 (발행 방법 및 조건) ① 공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교부·발행하되 공채의 권면금액은 10만 원권, 100만 원권, 500만 원권, 1,000만 원권 4종으로 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1984년 12월 31일

까지는 무이자로 하며 1985년 1월 1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연리 6퍼센트 단리로 한다.

제 5 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방법 등)

- ① 공채의 원금은 1985년 1월 1일부터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한다.
- ② 이자는 원금상환 시에 지급한다.
- ③ 원리금은 상환 기일 도래 이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공채의 소멸시효) 공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 (공채의 재교부 및 효력) ① 발행된 공채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채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공채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금고 및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 9 조 (시행 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8-8

제 856 호

시

보 1981.9.1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5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미판지구) 기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8 호 (80.12.31)
에 의거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 동교동로타리간 도시
계획 용도지구 (미판지구) 를 다음

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본래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책과
와 시민봉사실에 배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

1981. 8. 3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지적승인 내역

구분	종 면	연 장 (M)	면 적 (a)	위 치	비 고
기정	2 종	6,000 m	195,000 ㎡	의주로 2 가 - 제 2 한강교	
변경	"	6,000 m	224,000 ㎡	" " " (북아현동 - 동교동)	2,900 ㎡ 구간 마포구관내 20 m

• 현찰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6 호

육류연동가격 고시

육류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
산부 혼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
별시의 돼지고기 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 육류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 그램당) 2,350 원

2. 시 행 일

1981. 9. 1. 부터

◎ 종로구청 고시 제 57 호

종로구광고물제작 정비지구지정 고시

1981. 9. 1.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
서 울 특 별 시 장 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656 호 시 보 1981. 9. 1 38-9

광고물 제작 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한다.	3.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2. 제작 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 은 고시일로부터 신규제시(개점)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1981. 8. 27 종로구청장

제작 정비지구

구간	연장	비고
적선동 10-세종로 1번지 (효자로)	850 "	간선가시권포함
사간동 126- 삼청동 산 2 (삼청로)	2,100 "	"
적선동 107-궁정동 13 (궁정로)	1,000 "	"
궁정동 12- 청운동 산 2 (세검로)	850 "	"
적선동 10- 적선동 107 (사직로)	250 "	"
적선동 59- 적선동 136 (청사지내)	50 "	"

공고

◎ 용산구공고제 46 호

공인개작공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적인 및 제인을
개각 사용함에 따라 판인 규정
제 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사용일자
1981. 9. 30
2. 공인개작동명
한강로 제 1 동
3. 공인의 인영

인	
영	

: 1981. 8. 28

용산구청장

공인명

한강로제 1 동장적인 및 제인

38-10 제 856 호 시

보 1981.9.1

○ 강남구공고제 240 호

공인체작공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장직인 및 제인을 개각 사용승인 하였기 동 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

1981. 8. 28

강 남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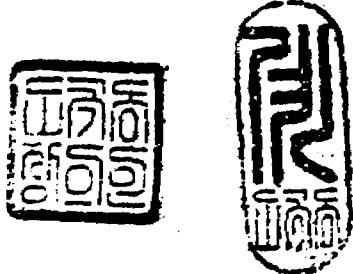
1. 개각 사용 개시일

1981. 9. 3 09:00

2. 공인개각동

도곡동

3. 공인인명

인
영

공인명

도곡장의직인 및 제인

예 규

서울특별시 경찰인원봉사실 운영규

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981년 8월 31일

○ 서울특별시예규제 414 호

서울특별시경찰인원봉사실운영
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경찰 인원봉사실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내무부 예 규 제 526 호 경찰 일원봉사실 운영 규정 제 15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경찰인원봉사실(이하 "인원실"이라 한다)의 설치, 조직, 인사,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원사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원사무 처리 규정 및 당시 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설치) 인원실은 서울특별시 경찰국과 각 경찰서에 설치한다. 다만 경찰국 교통과 및 연수과는 인원 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직무) 인원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일원사무의 접수 및 결과화시
2. 즉석 인원 사무의 처리
3. 중요 인원 사항의 우선 공람
4. 인원상담 및 안내 (출입자통제포함)

5. 문서 및 민원 서류 통제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소요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6. 문서수발 및 우표 수불	
7. 보존문서의 관리	제 7조 (민원실 근무자의 인사관리) 경감이 하 민원실 근무자의 전보, 승진자격 및 배치기준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8. 미아 가출인 신고의 수리 및 수배	①(자격 및 배치기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적격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경우 이외에는 겸직등의 인사배치를 금한다.
9. 유실물 신고의 수리 및 수배	1. 경찰경력 3년 이상인자
10. 범칙금 미납자 즉시출두 지시서 발부 (교통체 험조)	2. 민원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로 청렴결백한 자
11. 정치처분 만료 면허증 교부 (교 통체 험조)	3.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12. 유치인 연회	4. 성실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
13. 민원업무에 관한 연구 및 개선 발전에 관한 업무	5. 모범 경찰관으로 장래성이 있고 승진서열 상위인자
14. 기타 판서장이 필요하다고 지 정한 업무	다만, 제 1호 미지 제 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국 민원실에는 여자 경찰관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자를 선발 배치한다.
제 5조 (불수리사항) 던원인의 진정 또는 건의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근무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민원실 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
1. 두기경이거나 주소 성명이 불명 한 민원 사항	1. 충정제 처분을 받은자
2.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	2. 노약자, 장기 질환자, 전염병환자 또는 대민관계가 원만치 못한자
제 6조 (편제 및 인원) ①민원실은 국, 광, 서 모두 경무과장 소속하 에 둔다. 다만, 경찰국 교통과 및 면허과의 민원창구는 소속과장 소 속하에 둔다.	3. 기타 판서장이 민원실 근무자로 적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자
②민원실에는 실장을 두되 경찰국 은 경감으로 경찰서는 경위 또는 경사로 배치한다.	③(전보의 제한) 민원실 근무자는
③민원실에는 약간명의 직원(여자 경찰관포함)을 두되 민원업무의	

38-12 제 856 호 시

보 1981.9.1

1년이내에 타부서로 전보하지 못 하며 경사이하의 경비 부서 차출을 유보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징계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에는 예외로 한다.

④(회당에 따른 보직) 민원실에서 1년이상 성실히 근무를 수행한자는 본인의 회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승진에의 우선) 민원실 근무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승진에 있어 우선순위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 (민원창구등 시설) ①민원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별표 22와 같은 민원창구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 할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용할수 있다.

②민원실에는 다음 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중전화

2. 필기용 탁자 및 대기용 의자

3. 제 신청용지 및 필기용구

4. 음료수 시설

5. 민원 사무처리기간 및 수수료 계시

6. 기타 필요한 비품 또는 계시를

제 9 조 (민원서류의 접수) ①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파출소에서나

방법 순찰대의 순찰중에도 접수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민원실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 6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아 가출인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미아 가출인, 숨 둑 및 분실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민원사무 처리 주무과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 실의 처리부에 등재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구술, 전화 또는 우편등에 의한 민원) ①구술, 전화, 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한 민원사항도 별지 5호 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접수하고 처리한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②우편처리 민원 종목은 별지 3호와 같다.

제 11 조 (중요 민원서류의 우선공람 및 처리) ①다음 유형의 중요 민원서류 중 특히 중요한 사안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는 판서장의 사전 공람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전의

2. 부당 행정 행위 시정

<p>3. 경찰 공무원 비위</p> <p>4. 범법자 처벌 및 각종 단속</p> <p>5. 경찰행정에 대한 질의</p> <p>6. 신원조사에 관한 질의 및 특이 사항의 설정 요구</p> <p>7. 인허가의 신청</p> <p>8.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p> <p>②(처리기준) 경찰국 및 경찰서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우선공람권자가 따로 처리방법을 지정한 민원은 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p> <p>제 12 조(민원서류의 처리) 접수된 민원은 우선공람 민원과 보통민원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①(우선공람 민원서류의 처리) 제 9 조 제 1 항에 의한 우선공람 민원사항은 접수후 1 근무 시간내에 별지 7 호 서식인 우선공람 민원서류 처리카드에 판서장의 우선공람을 받아 처리방침을 명시하여 우선공람 민원서류 처리 보고카드와 함께 처리 주무과에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p> <p>②(보통민원서류의 처리) 우선공람 사항이 의의 민원서류는 접수 1 근무 시간 이내에 별지 9 호 서식에 의한 민원서류 처리카드 및 처리 보고카드를 첨부 처리 주무과로 배부한다.</p> <p>③(주무과의 처리)</p> <p>1. 민원서류를 이첩 받은 주무과에서 이를 소정 기일내에 처리하여</p>	<p>야 하며 중간회시, 지역통지, 처리 하명, 이첨, 이송등 처리결과를 회시 할때는 기안문, 시행문, 인·허가장(종결처리시는 민원서류 처리 보고카드첨부)을 민원실에 제출하여 통제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p> <p>2. 주무과에서 민원처리 관계인의 출석요구를 할때에는 별지 17 호 서식의 대장에 기입하고 별지 18 호 및 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담당사인을 날인 이를 민원 실에 회부하여 판서장 직인을 날인하고 우편발송부에 등재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관 제 출석요구서는 범죄수사 규정의 소정 절차에 따라 작성된 민원실에 회부 발송하여야 한다.</p> <p>3. 출석요구서의 작성과 발부대장 의비자는 국 및 서의 각과별로 작성 위치 활용한다.</p> <p>④(민원실장의 확인 감독) 민원실장은 제 1, 2, 3 항의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주무과에 촉구한다.</p> <p>⑤(필요한 경우의 일차 조서 작성) 고소, 고발, 진정, 기타 수사 또는 감찰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래방하였을 때에는 접수후 민원서류와 민원인을 주무과의 관계 직원에게 인계하여 필요한 경우내</p>
---	---

는 진술조서를 받도록 한다.
 ⑥(우편에 의한 민원 처리 회시) 제5항의 민원서류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의 결과 회시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대방하였을 때에는 직접 교부 할 수 있다.

제13조 (즉석 민원처리) ①즉석 처리 민원사무의 종목은 별지2호와 같이 이에대한 책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장업무의 조정을 별지1호와 같이 한다.

②즉석처리 민원사무는 사무 분할에 구애받이 없이 민원실에서 처리한다.
 ③민원실장이 제1항의 즉석처리 민원사무에 관한 서류(이하 '즉석처리 민원서류'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판례기록 또는 주무과와의 대조로서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 회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즉석민원서류는 별지제14호 서식에 의한 즉석민원처리부에 등재후 처리하고 완결된 때에는 소관 주무과에 회부한다.

제14조 (민원서류의 통제) ①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은 민원실장이 된다.

②모든 민원서류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하며 통제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별지15호 도면의 민원통제 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3. 결재구분의 적정여부
4. 처리기한의 경과여부

③통제관은 일일 민원접수처리 및 통제상황을 별지제10호서식의 민원 처리 일일결산부에 의거 보고한다.

④통제관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 점열을 월1회 실시하고 별지11호서식의 민원처리상황 점열부에 의거 보고한다.

제15조 (독촉장의 발부) ①민원실장은 각과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제1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별지제12호의 독촉장 발부내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p>② 1차 소속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 결과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소속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민원실장은 제2차 소속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 결과보고가 없을 때에는 관계자를 소속장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당해자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p>	<p>비간부중에서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p> <p>1. 경찰국 정 책임자: 각 체 업무 담당 과장 부 책임자: 소관 업무 담당 경위</p> <p>2. 경찰서 정 책임자: 각 체 업무 담당 과장 부 책임자: 소관 업무 담당 직원</p> <p>② 정 책임자는 해당 업무 민원처리의 모든 책임을 지며 부책임자는 정 책임자 유고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제 16 조 (부무자세) 민원실 직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을 다할 것. 2. 원희 계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 3. 모든 민원서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 4. 청소정돈을 확행하여 환경미화에 노력할 것. 5. 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안에 처리 결과를 회시 할 것. 	<p>제 18 조 (서류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 4호) 2. 구두 및 전화 도는 우편등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 5호) 3. 민원서류 접수증 (별지 6호) 4. 우선 공람 민원서류 처리 카드 (별지 7호) 5. 민원서류 처리 카드 (별지 8호) 6. 민원상담부 (별지 9호) 7. 민원처리 일일 결산부 (별지 10호) 8. 민원처리 상황 경열부 (별지 11호) 9. 소속장 발부 대장 (별지 12호) 10. 즉석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 14호) 11. 민원 통제 경열인 (별지 15호) 12. 우표발송부 (별지 16호) 13. 민원사무 편람 14. 민원 사무 관계 제법령 및 규정집 15. 제증명 발급 대장 (별지 23호)
<p>제 17 조 (민원처리 책임자) ① 제 10조 제 1,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실로부터 이첩받은 민원사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책임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 민원처리의 「정」 책임자와 「부」 책임자를 두되 간부 또는</p>	

38-16 제 856 호 시

보 1981.9.1

<p>② 민원사무처리부는 업무량을 고려 단일 또는 수개의 부서으로 나누어 배치 할 수 있다.</p> <p>③ 제 1 항제 13 호의 민원사무 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그 처리 주무과 처리기간, 처리과정, 기타 민원인에게 편리한 안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 19 조 (이동민원실) ① 이동민원실은 월 1회 이상 원거리 주민을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의 민원실에는 반드시 판서장이 실장으로 임하여야 한다.</p> <p>제 20 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판서장이 정한다.</p> <p>제 21 조 (경과조치) 이 규정에 위배되는 다음사항은 본 규정시행후 6개월 이내에 시정하여야 한다.</p>		<p>1. 민원실 요원의 점진, 배치 설정</p> <p>2. 부장업무 조정에 따른 관제서류 및 대장통 이관</p> <p>3. 교통소관 협조 업무 처리에 따른 이원화 감독의 조정</p> <p>4. 미아 가출인 유실물에 관한 업무 이관 (국해당과 별도 업무지시)</p> <p>5. 문서통제에 관한 업무 이관</p> <p>6. 민원실장 전결권 확대에 따른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국·서)</p>
--	--	--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서울시 예규 제 378호 (78.8.10)
서울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1호> 부장 업무 조정 (기일을 요하는 접수 이첩 처리 업무 제외)

기능별	조 정 업 무 명	처비주 관부서	처 리 방 법	비고
공 통	사실증명 및 확인	민원실장	주무제 기록대조 확인후 민원실 즉시 반급	
사 항	신고확인서 발급 민원처리 회시 및 허가증의 교부등	"	기록대조후 즉시 발급 주무제에서 회시문을 민원실로 인계 민원 통제절차 이행후 대의 시행	
경 무	문서 및 민원통제 문서의수발 우표의 수불 서고 관리 납품 실적 증명	"	문서 및 민원통제에 소요되는 대장 직인, 양식비치, 절차에 의한 통제 문서의 수발 배포 보존문서의 정리 및 관리 기록대조 확인후 발급	

기능별	조정업무명	처理부서	처리방법	비고
	경력회적, 표창사실등 증명 감찰 진정수리 1차 조서작성	민원실전담 장무체전담	기록대조 확인후 발급 급속을 요할시 접수후 경무과 인계 즉시 진술조서 작성	업무 이관
보안	고물상 및 고물시장 흠페 업 신고	민원실전담	수리후 서류 인계	
	전당포 휴, 폐업 신고	•	•	
	고물상 및 고물시장 판매	•	•	
	인선해임 신고	•	•	
	고물상 대장 검인	•	검인 교부	
	전당포 관리인 선해임 신고	•	수리후 서류 인계	
	전당률 대장 및 유전률 대장 검인	•	검인후 교부	
	가출인 및 미아신고 수리 및 수배	•	신고수리와 수배까지 담당	
	유실물 신고 수리 및 수배	•	•	
	고물 경매 신고	•	수리후 서류 인계	
교통	기타 분실물 신고 확인후 발급	•	기록 확인 발급	
	자동차 승차객재 초과 제한 허가	•	수리허가후 서류 인계	
	도로공사 신고	•	수리후 서류 인계	
	사고 증명 발급	•	기록 확인후 발급	
	범칙금 미납자 축습출두자시 세 발급	교통제 형조처리	증진과 같이 처리	
수사	정지 처분 반로 면허증 교부	•	•	
	유치인 면회	민원실전담	수리 조회가 부결점 신청인 수사과 인계	
	도난신고 확인원	•	기록확인후 발급	
	구두에 의한 고소고발전정 일차조서 작성	수사파전담	급속을 요할시 접수후 신청인 수사과 인계 조서 작성	업무 이관

38-18 제856호 시

보 1981.9.1

<별지 2호> 죽석처리 민원사무 일람표

구 분	죽석처리 민원 사무 명	비 고
경찰국	1. 납품 실적 증명원 2. 경력 증명원 3. 퇴직 증명원 4. 표창 사실 증명원 5. 순직, 전사, 공상확인 증명원 6. 신용조사업 폐업 및 휴업 신고 7. 신용조사업 허가 사업 면정 신고 8. 카지노 및 투전기업소 폐업 및 휴업 신고 9. 사격 및 사격장 폐업 휴업 신고 10. 자동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연기 신청 11. 운전면허 경력 증명원	경 무 보 안 교 통
경찰서	1. 납품 실적 증명원 2. 경력 증명원 3. 퇴직 증명원 4. 표창 사실 증명원 5. 고물상 및 고물시장 폐업 및 휴업 신고 6. 전당포 폐업 및 휴업 신고 7. 고물상 및 고물시장 관리인 선임(해임) 신고 8. 고물상 장부 검인 9. 전당포 관리인 선임(해임) 신고 10. 전당률 대장 및 유전률 대장 검인 11. 무단 가출인 및 비아수배 신고 12. 유실물 수배 신고 13. 고물 경매 신고 14.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초과의 제한 허가 15. 도로 공사 신고	경 무 보 안 교 통

* 경찰국장 또는 차장은 필요할때에는 상가 민원사무 이외에 죽석 민원사무를 추가 지정할수 있다.

<별지 3호>

우 편 처 리 민 원 총 별

기관별	일련번호	제 목
공통	1	진정 또는 진의
	2	질 의
	3	사실증명
	4	확인
경무	5	남용실적증명원
	6	퇴직증명원
	7	경력증명원
	8	전사상, 순직, 공상확인증 발급신청서
	9	옹시원서
보안	10	사행행위(투전기, 카지노) (신규, 개신) 허가신청서
	11	복표발행허가신청서
	12	현상발행허가신청서
	13	유사사행행위(경품권) 허가신청서
	14	유사사행행위(주첨권) 허가신청서
	15	사행행위(무선기, 카시노) 영업의 주업, 재개업, 폐업신고
	16	고물상, 시장주허가신청서
	17	고물상, 시장주(영업장소 이전취급종류변경) 허가신청서
	18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19	고물상, 시장, 고물행상(폐업, 휴업, 휴업연기) 신고서
	20	고물상허가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
	21	고물상허가증 시장주허가증 고물행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38-20 제 856 호 시

보 1981. 9. 1

기관별	일련번호	제	목
보안	22	고물상의 행상(고물행상) 신고서	
	23	고물경매신고서	
	24	전당포영업(신규, 양수, 상속) 허가신청서	
	25	전당포 영업소이전허가신청서	
	26	전당포(폐업, 휴업, 휴업연기) 신고서	
	27	전당포 영업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28	전당포(관리자선임, 관리자해임) 신고서	
	29	전당포허가증 재교부신청서	
	30	총포소지허가(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	
	31	총포(화약류) 허가(면허)증 재교부신청서	
	32	화약류저장소허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33	화약류저장소 안전장소지정신청서	
	34	월중화약류 상황신고서	
	35	화약류(제조, 관리) 책임자(선임, 해임, 변경) 신고서	
	36	화약류 안전도시험실시결과 신고서	
	37	신용조사업허가신청서	
	38	신용조사업허가변경신고서	
	39	신용조사업(폐업, 휴업, 휴업연기) 신고서	
	40	신용조사	(신상신고, 신상변경신고명부) 서
	조사원	41	사적장시설변경허가신청서
42		사적장(허가사항변경, 사용폐지) 신고서	
	43	총기(공기총) 보유학교 지정신청서	

제 856 호 시

보 1981. 9. 1. 38-21

기관별	일련번호	제 목
보안	44	사격장준공신청서
	45	유실물신고
교통	46	자동차적재초과허가신청서
	47	자동차적재초과허가증
	48	자동차운전면허증시원서 및 신체검사서
	49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
	50	국외운전면허교부신청서
	51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서 및 신체검사서
	52	국제운전면허임시적성검사신청서
	53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
	54	자동차운전면허기재사항 변경신청서
	55	운전경력증명서
	56	자동차운전면허증허가신청서
	57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58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
경비	59	공용야간통(운)행증발급신청서
	60	공용야간통(운)행증재교부신청서
	61	일반야간통행증발급신청서
	62	일반야간운행증발급신청서
	63	일반야간통(운)행증재교부신청서
	64	용역경비업허가신청서
작전	65	전투경찰증시원서

38-22

제 856 호

三

四

1981, 9, 1

〈별지 4호〉

민 위 사 무 처 리 부

〈별지 5호〉

구술, 전화 또는 우편통에 의한 미의 사무 처리부

제 856 호 시 보 1981.9.1 38-2

별지 제 6 호

접 수 증

번호 : _____

198

(민원인보관)

민원서류명 :

통 수 :

유 첨 물 :

처리기간 :

198 . . . 까지

제출자 주소

성명

접 수 증

번호 : _____

(민원인에게교부)

민원서류명 :

통 수 :

유 첨 물 :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는 198 . . . 까지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98 . . .

관서민원봉사실 계급 성명
귀하

인

(규격 16 절지)

1784

38-24 제 856 호 시

보 1981.9.1

별지 7호

우선공람민원서류처리카드

서울특별시

접수 : 재 호

수신 :

제목 :

장	장	우
		선 공 람

민원(진정)요지

처리기준

- | | |
|----------------|-------------|
| 1. 경찰국
처리 | ○현지조사 |
| | ○비위공무원문체 |
| | ○부당행정행위지정조치 |
| 2. 이송 - 처리결과보고 | |
| 3. 이송 - 적외 처리 | |
| 4. 시책반영 | |
| 5. 참고처리(공람) | |

별첨 민원서류를 이송하니 위 처리기준에 의하여 198 . . .
까지 (일간) 처리하고 결과를 즉시 민원봉사실에 통보 바람.

198

민원서류통제관 민원봉사실장

우선공람민원서류처리보고카드

수신 : 민원봉사실장
발신

198

제목 : 민원서류처리결과통보	접 수 일	198 . . .
민원번호 제 호	완 결 일	198 . . .
처 리 별	해당란에 ○ 표시	처 리 내 용
1. 요망사항 해결		
2. 요망사항 해결불가		
3. 공람(참고처리)		
4. 서약증	○결과보고 ○이송완료	
5. 대부처 이송		○발송번호

제 856 호

시

보

1981.9.1

38-25

별지 8호

민원서류처리카드

서울특별시

접수번호 : 제 856 호

198 . . .

수신 :

제목 :

별첨민원서류를 이송하니 민원사무 처리규정 및 동 시행 세칙에
의하여 198 . . . 까지 (일간) 처리하시고 결과를 아래보고
카드에 의거 민원봉사실에 통보바람.

민원서류통제관 민원봉사실장

민원서류처리보고카드

수신 : 민원봉사실장

198 . . .

발신 :

제목 : 민원서류처리결과통보	접수일	198 . . .	
민원번호 제 856 호	완결일	198 . . .	
처리별	해당란 <input type="radio"/> 표시	처리내용	주무과장인
1. 요망사항 해결			
2. 요망사항 일부 해결			
3. 요망사항 해결불가			
4. 공람완결			
5. 이송	<input type="radio"/> 결과보고 <input type="radio"/> 이송완결		
6. 타부처 이송			

38-26 제 856 호

시

보

1981. 9. 1.

별지 9 호

구분	즉석	사후처리
일재		
누재		

민원상담부

상담월일	상담자주소성명	상담내용	처리결과	확인인

※ 확인란은 봉사실장이 확인 날인

(규격 16 절지)

별지 10 호

민원처리일일결산부

구분 기능별	접수건수	즉석처리	주무과회부	시행건수	비고
제					
경무					
보안					

(규격 16 절지)

제 856 호

21

四

1981.9.1 38-27

〈별지 11 호〉

민원처리상황검열부

검열월일		검열건수	
검열권		지적건수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점수		기능별	민원사무명	지적사항	조치내용
번호	월일				

(규격 16 철자)

〈별지 12호〉

독 축 장 발 부 대 장

(규격 16 절지)

-26 제 856 호

시

1981.9.1.

〈별지 13호〉

독 축 장

기 관 평

제 호

198

수 신 :

참 조 :

목 :

제 1 (2) 차 독 축 장

(1) 민원인주소·상세

(2) 민원사무명 :

(3) 접수 번호 :

(4) 발신 일자 :

(5) 제출 일자 :

위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제 차 독축을 하오니 198 까지
처리 완결하고 처리결과보고 카드를 제출할것.

(국) 민원사무통제판
서

제 856 호

三

1981.9.1 38-29

별지 14호

즉석민원처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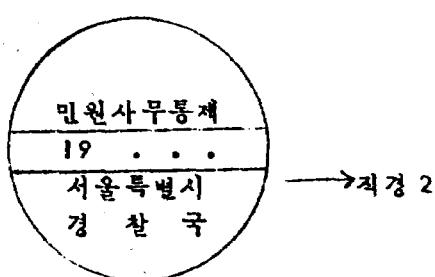
※ 기 제 요

(규격 16 철자판으로!)

1. 절수 또는 처리 담당자 : 민원실에서 취급 처리한자 계구 성명 기입
 2. 협조 또는 조회 : 관계과 계와 협조하였을시 취급자는 협조한자와
성명을 기입하고 내용은 협조내용기재
 3. 원본수령인 : 처리완결후 원문을 주무과 계에 인계시 수령한자
 4. 확인자는 민원실장 처리상황확인
 5. 처리결과 : 증명 및 확인서발부시는 "발행번호", 신고사항의 수리시는
"수리이첩"으로 기입

〈별지 15호〉

미 윈 톰 제 전 회



38-30 · 條 856 · 立

八

1981.9.1

〈별지 16호〉

中華書局影印

결 재	월 일	발신자및 문서대호	수신자 주소성명	우 표		금 액	비 고
				단 가	수 량		
제장 및 담당							

〈별지 17호〉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제 856 호 시

보 1981. 9. 1 38-31

<별지 18호>

15.0 cm

19 년 제 호

19 . .

출석요구서

주 소
성 명

출석요구일

출두월 일

19 년 제 호

19 . .

출석요구서

귀하 에 대하여 문의 조사 청문고지 하오니

19 년 월 일 시안에 당서 과 계에 출석

요구서(주민등록증)와 도장을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경찰서장

책인

담당

* 경찰조사, 면허행정처분, 행정법규 위반 인허가등 조사용

1788

38-32 제 856 호 시

보 1981. 9. 1

<별지 19호>

15.0cm

19 년 제 호

19 . . .

출석요구서

주 소

6.0cm

성명(회사명)

출석요구일

출두월 일

19 년 제 호

19 . . .

귀 소유 서울 호차

사전에 대하여

조사코자 하오니 운전자를 19 년 월 일 시까지 당시

15.0cm

경비와 교통비에 출석요구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도장을 가

지고 나와 주십시오

경찰서장

직인

담당

제 856 호 시

보 1981. 9. 1 38-3

<별지 20호>

우 편 영 서

우
표



받는 사람
(이름)

(주소)

보내는 사람

경 찰 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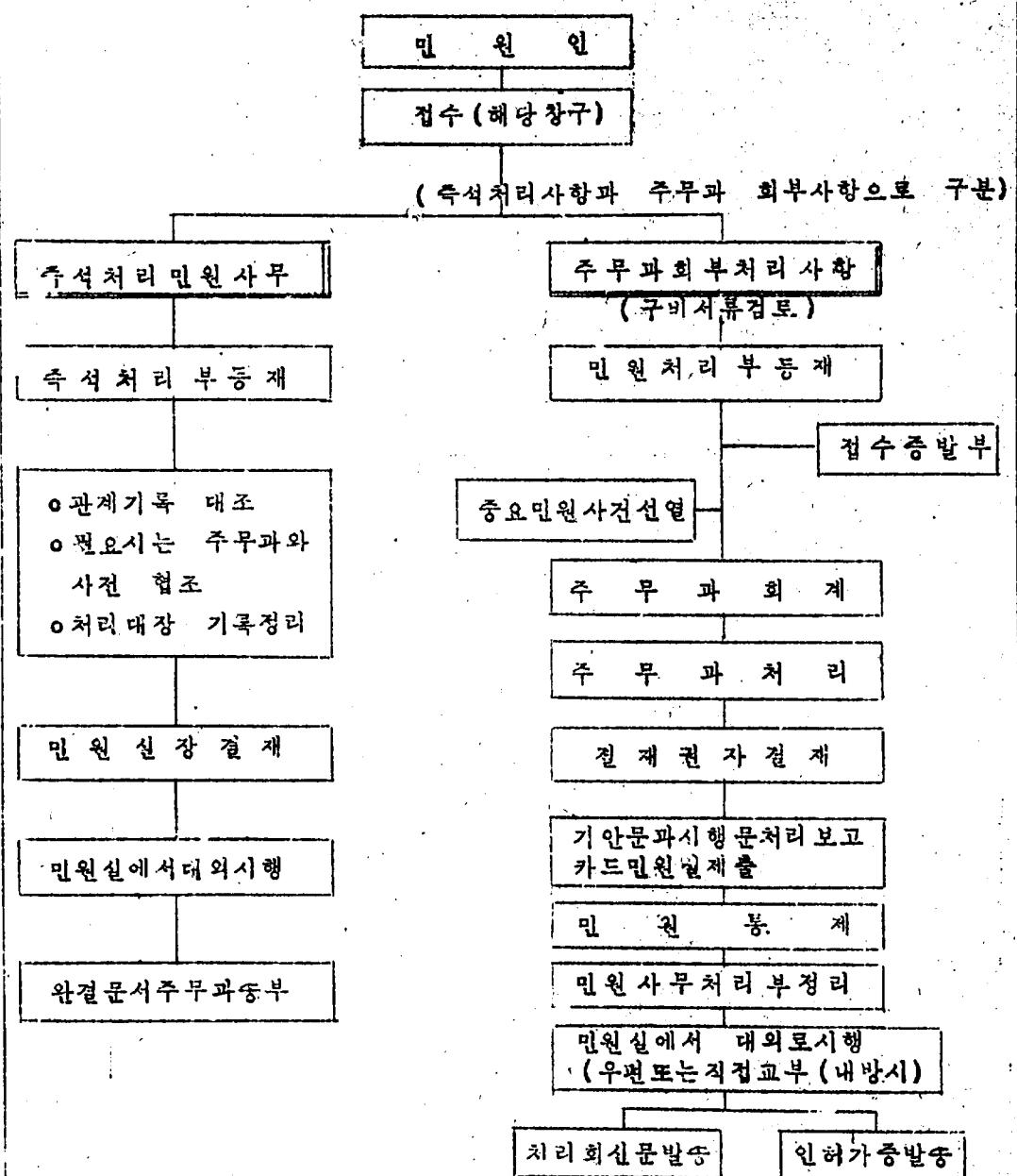


34 제 856 호 시

보 1981. 9. 1

<별지 21호>

민원 실 업무 처리 체계도



제 85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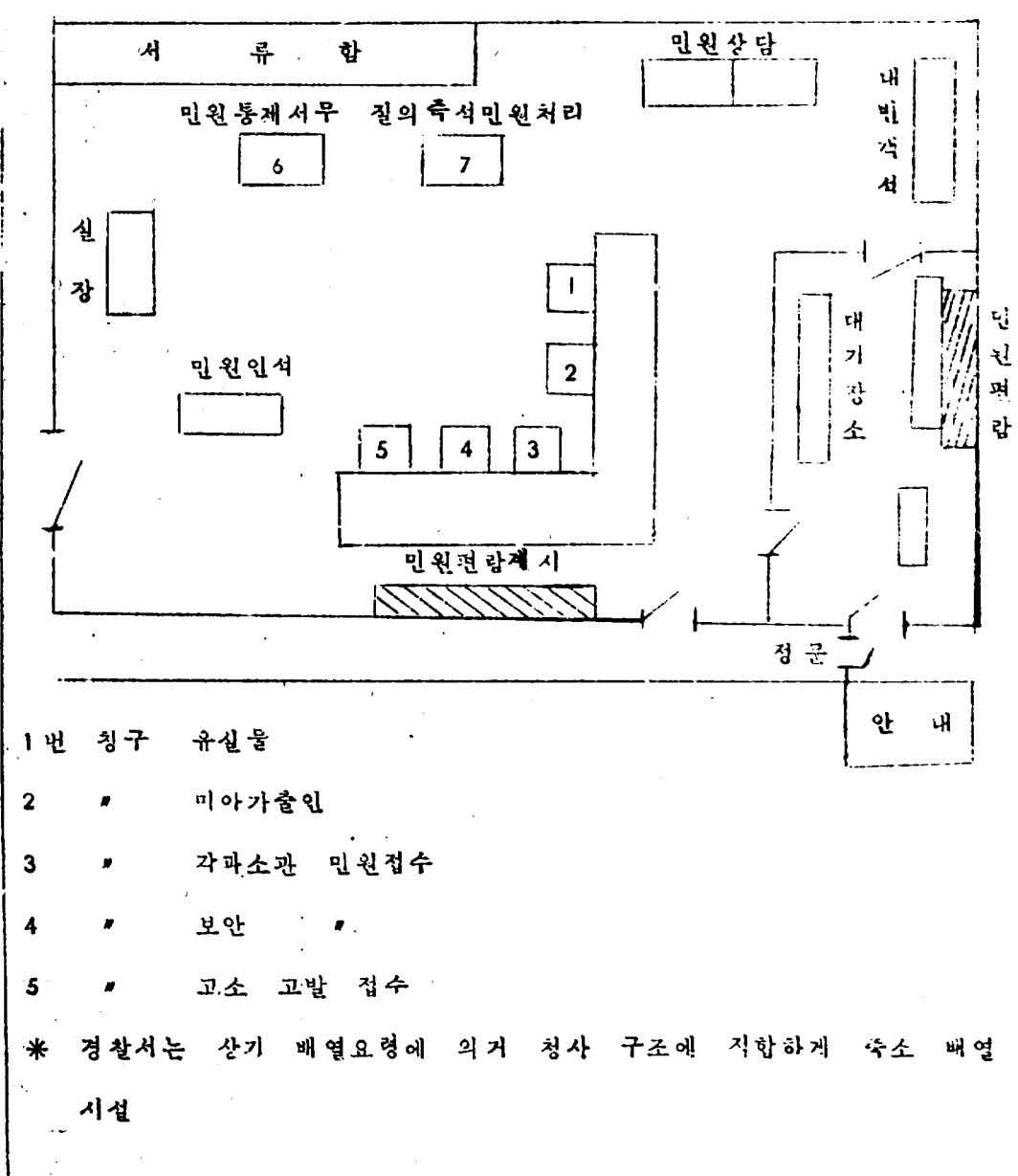
시

보

1961.9.1 36-35

<별지 22호>

민원봉사실 평면도



1790

9 36 - 제 856 호

시

四

1981.9.1

<별지 23호>

재 증 명 발 부 대 장

기재요령

1. 발행 번호: 제증명 발행일순에 따른 일련번호
 2. 민원인설명: 소속직원일 경우는 비고란에 소속 계급 기입
 3. 접수번호: 즉석 민원서류 처리부등에 기록된 번호

*본대장은 민원실에 통합 비치하고 소관별 비치대장은 폐지 할것.

출신처리 이첨가를 제외한 이첨가대장은 소관별로 비치

즉석처리 인허가를 제외한 인허가대장은 소관별로 비치

사 령	◎ 1981.8.26	령 326
	주 택 국 장 손 월 수 이 사 판	
◎ 1981.8.1	령 323	
농 축 과 잡 용 철 지방수의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 직위해제

제 856 호 시 보 1981.9.1 38-37

◎ 81.6.31 형 328 형 329

용산구 산업과 조태웅 지방행정사무관 종합운동장지설본부	지방행정사무관 한규현 복직을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	---------------------------------------

◎ 81.9.1 형 327 호

성명	발령사학	비고
강상연	공무원교육원 2호봉 지방행정직 7급 상당 (고압가스관리기사)	
김명자	강남 병원 1 · · · (영양사)	
서완순	2 · · · (뇌파기사)	
유은숙	동부여자기술원 2 · · 9급 상당 (부녀상담원)	
한혜림	아동상담소 1 · · 8급 상당 (아동복지지도원)	
박규희	1 · · ·	
유준식	1 · · ·	
김건배	3 · · ·	
이정오	도시가스사업소 9 · · 7급 상당 (고압가스관리기사)	
장경수	6 · · ·	

형 330	시정개발담당관 백재승 지방행정주사보
운수 2과 강우식 지방행정사무관	울지연습 '81 통제단요원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9.30) (전시직제요원)
울지연습 '81 통제단요원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9.30)	교통행정과 정재원 지방행정사무관 울지연습 '81 통제단요원 파견근무를 해제함.

·33 제856호 시

보 1981.9.5

충무파정일영
지방운전원

보건연구원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12.31)

충무파율소일로
지방운전원

농작구보건소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12.31)

충무파김영만
지방운전원

강동구보건소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12.31)

충무파복순
지방운전원

강남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12.31)

충무파침일웅
지방운전원

영등포구보건소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12.31)

충무파신재웅
지방운전원

김포수원지 사무소 파견근무를 명함
(81.9.1-81.12.31)

서울특별시장